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발의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와 지원을 위한 다수 법안을 통합해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은 곧 문화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이래 오랫동안 견지하던 문화재의 점적 보존 기조를 면적, 공간적 정비로 본격화하는 동시에,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 ⇄ 보존·정비 ⇄ 이해·창출이라는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 제시한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

특별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

-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로써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됨

법 제정 이후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고시,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선도사업 공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

- 2023년 2월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하여 선도사업 (마중물 사업)을 공모했으며, 연말 지자체 정비시행계획 심의·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역사문화권 정비제도 또한 자리를 잡고 원활히 작동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과도기

-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계획체계(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정립 및 제도화, 추진주체(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정비사업 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등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

0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으로 국토품격 제고 기반 강화

특정 권역 또는 분야의 이름으로 공간계획 및 정책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역사문화권의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다수의 유사법률안 발의

- 역사문화권¹⁾이 국토계획에 등장한 것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었고, 이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1~2020)’에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문화권 유적정비사업(문화재청), 문화관광형 특정지역사업(국토교통부), 광역관광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산물로 등장(이순자 2021)
 - 오랫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계획에 반영되거나 국가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 2000년대 들어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지역 주도로 역사문화권의 보존과 관리 및 정비와 국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발의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이순자 2021)
-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6월 드디어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제정
 - 2019년과 2020년 각각 법제화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역사문화권정비법」으로 통합(이순자 2021)

〈표 1〉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관련 특별법안 제안현황과 심의결과

법안명	제안현황	심의결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14.10.18. / 2017.05.29.	제정(2019.12.1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7.05.30. / 2020.07.14.	-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률명: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02.28.	제정(2020.06.0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015.07.23. / 2016.06.16. 2017.08.25.	-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9.06.27.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018.11.01. 2019.11.05.	-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2014.10.18. / 2017.05.2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9.04.11.	제정(2020.06.09.)

자료: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년 6월 29일 검색); 법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3년 6월 29일 검색)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이순자 2021을 수정.

1 문화권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생활권, 학맥, 통혼권 등이 형성된 역사문화공간 또는 동질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인식을 지닌 공간범역으로 정의(채미옥 외 2012)되며,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장석홍 2014).

- 특별법 제정은 곧 해당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함.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오랫동안 문화재의 점적 보존이라는 기초를 견지했다면, 전국을 아우르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은 곧 대상과 범위, 관리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법 제1조 규정(“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와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특별법 제정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만 포함되었으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마한의 공간범위 확대를 비롯해 역사적 실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중원과 예맥, 그리고 후백제까지 추가한 것을 통해서도, 유적과 지역이 상생하는 발전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음

〈표 2〉 역사문화권의 정의와 역사문화권별 공간범역 및 주요 특징

역사문화권의 정의와 공간범역	역사문화권별 주요 특징				
	구분	문화	정치체	국경 (영역국가)	성격
법 제2조(정의)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고구려 역사문화권	○	○	○	복합성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백제 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백제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신라 역사문화권	○	○	○	복합성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신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가야 역사문화권	○	○		복합성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한 역사문화권	○	△		복합성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마한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탐라 역사문화권	○	△		복합성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를 중심으로 탐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중원 역사문화권	○			지역성 종족성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를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예맥 역사문화권	○			지역성 종족성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을 중심으로 예맥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후백제 역사문화권	○	○	△	복합성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후백제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자료: 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년 6월 29일 검색); 법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3년 6월 29일 검색); 문화재청 2022b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

-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이 지속적인 학술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즉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규명⇄보존·정비⇄이해·창출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순자 외 2017)

- (유적과 그 가치의 발견과 규명)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의 토지 매입, 지표조사~시굴 조사~발굴조사, 발굴유구 기록을 토대로 당해 유적의 역사적 중요성과 타 유적과의 관계, 학술적 가치, 발굴과정, 현재 보존상태 및 관리현황, 추가 발굴 필요성 등 학술조사·연구의 자료 축적 등
- (유적과 그 가치의 보존과 정비) 유적의 보존·복원·정비방침 마련,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역사적 진정성을 유지하되 드러난 실체를 보여줄 다양한 대안(문화재 보존 처리, 적정유적·유구 가시화, 발굴유적·유구 관리, 배수, 습도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등) 제시, 대안별 유적 훼손가능성 검토 등
- (유적과 그 가치의 이해와 창출) 문화재 공개방식(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확대 및 다양한 대안 마련, 발굴문화재의 다양한 스토리라인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첨단기술 이용 관광자원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주민·방문객 참여방안 마련 등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

■ 첫째,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 본격화

-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구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의 역사적 맥락과 도시구조 등을 중시하는 접근, 즉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핵심지역 전반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을 본격화한 법률
- 다만, 「고도육성법」 제2조의1 규정(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고대 왕도(王都) 네 곳만이 정책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기준(‘특정시기 수도 또는 임시수도 이외에 정치·문화 중심지’ 추가)을 신설함으로써 고도 지정기회를 타 도시로 확대
- 「고도육성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추가지정은 그 절차와 과정을 고려했을 때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2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야말로 유적을 지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즉 고도보존육성정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법·제도 변천사



자료: 문화재청 2022a를 바탕으로 최근 제정된 법률(「국가유산기본법」, 2024년 5월 17일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해 수정.

■ 둘째,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을 지정문화재에서 비지정문화재로 확대

- 「역사문화환경정비법」 제2조의2의 규정(“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비지정문화재도 학술조사·연구에서부터 정비에 이르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그동안 비지정문화재 관련 사업의 추진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였음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환경정비법」의 제정은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
-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은 2020~2024년 동안 총 233억 원을 들여 지상에 노출되어 훼손 또는 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권역별 전수조사를 실시 중
- 지난 3년간 대구·경북·강원지역 1만 4,248건(2020년), 서울·인천·경기지역 1만 2,343건(2021년), 부산·울산·경남·충청지역 약 1만 8,000건(2022년) 등 약 4만 4,600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였고, 올해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내년에는 전북·대전·세종지역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으로, 모두 완료되면 약 6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지자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근거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표 3〉 전국의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실시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권역	대구·경북·강원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충남·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대전·세종
조사건수	14,248건	12,343건	18,000건(예정)	10,000건(예정)	9,000건(예정)

자료: 문화재청. https://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890§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2023년 6월 29일 검색).

■ 셋째,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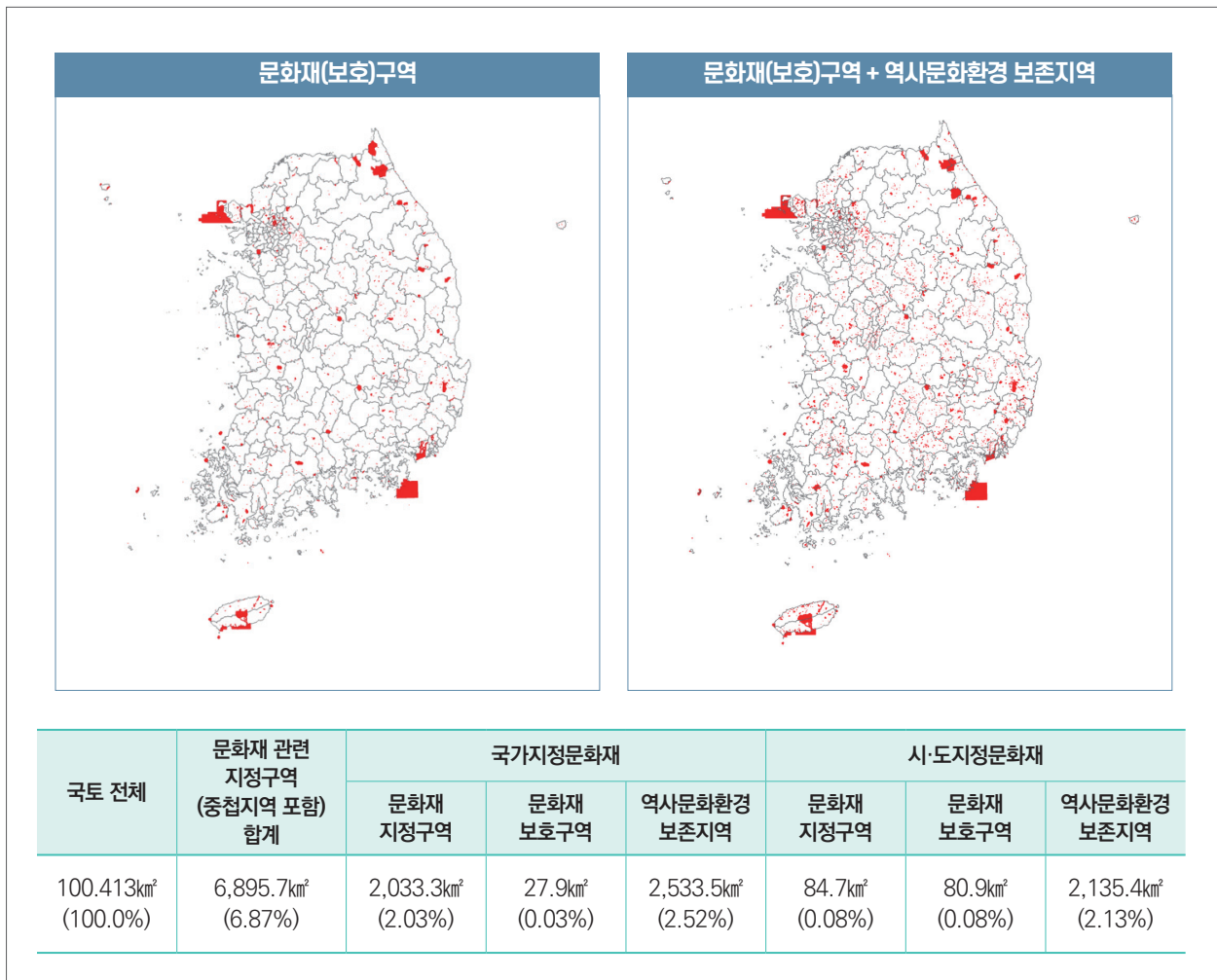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에서는 ‘시대변화, 미래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문화재 정책기능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친화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 증진과 함께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번 특별법을 통해 「문화재보호법」 제13조²⁾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지정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역사문화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특히 위의 국정목표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지역으로만 인식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정책적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다는 점, 「역사문화환경정비법」 상 역사문화환경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2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⑥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림 2〉 우리나라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분포현황



주: 상기 도면은 국가지정문화재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s://data.nsdi.go.kr>);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main.do>); 조홍석 외 2021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넷째,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 가능

-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³⁾를 근거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로 구분되어 관리
-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의2와 3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을 역사문화권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이며,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문화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유형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모두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
- 이는 올해 실시한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선도사업 예시로 제시된 사업유형 가운데 역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무형문화재의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 시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연구와 정비 및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방안 강구도 중요해짐

3 제2조(정의)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02 관련 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공모 등 그간 추진현황

특별법을 근거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

-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6개 역사문화권에서 9개 역사문화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특별법으로 자리매김
 -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
- 특별법 제정 이후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수립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2022~2026) (이하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고시(2022년 4월 12일) 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수행
 -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이슈가 되던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가 실시되었고, 전국의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와 함께 지자체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연구도 진행 중임
- 고시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조사·연구에서부터 보존·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이 계획에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권 조사·연구사업, 문화유산 정비사업(발굴·보존·복원), 공간환경 정비사업, 활용·육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들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가능하도록 설계

〈표 4〉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사업의 유형

조사·연구사업				문화유산 정비사업(발굴·보존·복원)			
역사문화권 유적 및 유물, 문화유산 등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유적 및 유적지의 창의적 복원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 문화유산 및 가치에 대한 조사·연구	역사문화권 특성 및 지역자원 발굴에 대한 조사·연구	역사문화권 유적 및 유적예정지에 대한 발굴·보존·복원	유적 발굴에 대한 기반 마련	민간 발굴조사 참여유도 및 활성화	역사문화권 유적의 발굴·복원과 관련된 자료 구축·공유
역사문화권 유적 실태 조사	역사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특성을 고려한 심화 연구	역사문화권 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 연구	유적 및 유적예정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유적지 보존·복원	유적지 발굴조사를 위한 거주민 지원에 관한 이주마을 조성	유적 발굴조사 공개, 유적 공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적자료 기록화 및 정보체계 구축, 유적지 3D 가상체험공간 조성, 유적지 전시공간 및 조망시설 조성 등	
공간환경 정비사업				활용·육성사업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경관 개선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경관 특성화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역사환경 및 역사가로 보존·관리·활용		역사문화권과 연계한 지역발전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산업 육성	역사문화권 가치인식 제고 및 가치 발굴을 위한 교육	역사문화권과 연계되는 지역 브랜딩
유적 및 유적예정지 주변 생활공간 경관 개선, 유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경관 조성, 유적 특성을 고려한 역사경관 및 가로경관 관리, 유적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사가로 조성, 유적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개선 등				역사문화권 기반 도시재생, 관광자원화·특화, 지역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설립, 전문기관 마련 등	주민 아카데미, 주민 모임활동 지원, 주민 해설사 양성 등	

자료: 문화재청 2022c.

2023년 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홍보와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제1차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며, 2023년 말 1차 선정된 지자체의 정비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2024년부터 사업착수 예정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 확산 및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모델 발굴을 위하여 2023년 2월 선도사업(마중물 사업)을 공모
 -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사업 비용)를 근거로 하는 이번 공모는 2024년부터 최대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투입하는 사업
 - 이번 공모를 통해 1차로 3~4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의해 수립될 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과 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3〉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절차



자료: 문화재청.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0199&no=26859&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2023년 7월 18일 검색) 내용을 수정.

- 이번 선도사업 공모에서는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유형과 유형별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으로 구분
 - 자본보조사업은 비지정유적 및 주변부 통합 정비,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향유공간 발굴 및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보조사업은 역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역사문화권 홍보·브랜딩 지원으로 구성

〈표 5〉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계획상 사업유형 및 예시

1. 자본보조 사업	1-1. [비지정유적 및 주변부 통합 정비] 비지정유적 중 가치가 규명되었거나 정비 시 파급효과가 큰 경우, 유적의 보수·정비와 주변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비지정유적의 보수·정비, 조망점, 유적안내판 등 설치, 접근로 및 주차장 조성 등)
	1-2.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유적에 인접한 개별 건축물 및 가로환경 등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역사문화권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환경 개선 및 조성사업
	1-3. [역사문화 향유공간 발굴 및 조성] 민간 건축물을 활용한 유적 조망공간 조성(노후건축물 수선, 옥상공간 난간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역협의체 활동, 역사문화권 콘텐츠 등 향유 공공건축물 조성(리모델링)
2. 경상보조 사업	2-1. [역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역사문화권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웹툰, 영화, 문학, 드라마, 음악, 도서, 창작연극 등 각종 매체로 대국민 이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역사문화권 관련 고증·복원·실감체험 등을 위한 디지털 영상, AR 가상복원, IT 기반 해설프로그램 개발 등
	2-2. [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역사문화권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축제 및 행사 등 기획, 구상, 운영, 비지정유적의 체계적 발굴·정비를 위한 주민협약 추진 등
	2-3. [역사문화권 홍보·브랜딩] 가치가 규명된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홍보·브랜딩(SNS 운영, 역사문화권 통합디자인 도출 등)

자료: 문화재청.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0199&no=26859&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2023년 7월 18일 검색) 내용을 수정.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우선 사업의 성격과 규모, 파급효과, 지역주민 호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선도사업을 통해 사업의 추진성과나 효과성 등을 모니터링해 정비사업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의 다각화도 도모할 계획

03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

■ [사·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사·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 2020년 법 제정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 그리고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추가되면서 특별법의 정비대상이 9개 역사문화권으로 증가
- 이는 최초 법 제정 당시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의 정치적 노력과 법안 개정 요구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사·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의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유적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논의이다 보니 학문적 성과와는 별개로 계획적 차원에서의 사·공간 범위에 관한 결론 도출은 다소 아쉬움
- 문헌연구와 유적·유물의 발견 등 고고학적 증거 축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규명 노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 사·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와 함께,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설정, 정비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력 제고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 등과 더불어 국토정책, 지역계획, 도시설계, 경관 및 조경, 건축, 디자인,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이러한 필요성은 역사문화권의 사·공간 범위와 관련해 또 다른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련 내용을 경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임. 즉 법 제2조의 1에서 9개 역사문화권이 공간범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역사문화권별로 시간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특정시기에 한정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하는 한계로 작용
- 한반도 고대 역사를 단절적, 분절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선사시대~고대~중세로 이어지는 연속 선상, 즉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문화권 정비를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역사문화권 정비전략계획이나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설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대중첩성이 고려될 필요
- 다만 지나친 융통성 부여는 자칫 역사문화권별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정시기를 중점 으로 하되 전·후 시기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중요 유적들도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정비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략계획이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제시되어 있는데, 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전략계획 수립의 주체가 역사문화권이라는 초광역적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고, 광역지자체가 될 수도 있으며, 기초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전략계획 수립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 전략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수립된 전략계획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시안임
-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중장기 청사진 제시, 정비구역 설정과 정비구역별 우선순위 부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계획이 꼭 필요하다면, 권고 수준을 넘어서 「역사문화권정비법」상 계획체계로 흡수시키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

- 또한, 전략계획⁴⁾의 수립주체별 역할 및 관계를 비롯해 역사문화권-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위 전략계획별 위상과 주요 내용에 관한 정리도 중요함. 역사문화권 전략계획과 광역지자체 전략계획 수립이 과연 가능할지,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추진될지 등과 결부되는 이슈로, 다수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업이 상당히 어렵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 단일 광역지자체라 하더라도 소수 시·군을 위한 전략계획 마련에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 전략계획 수립과 제도화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할 필요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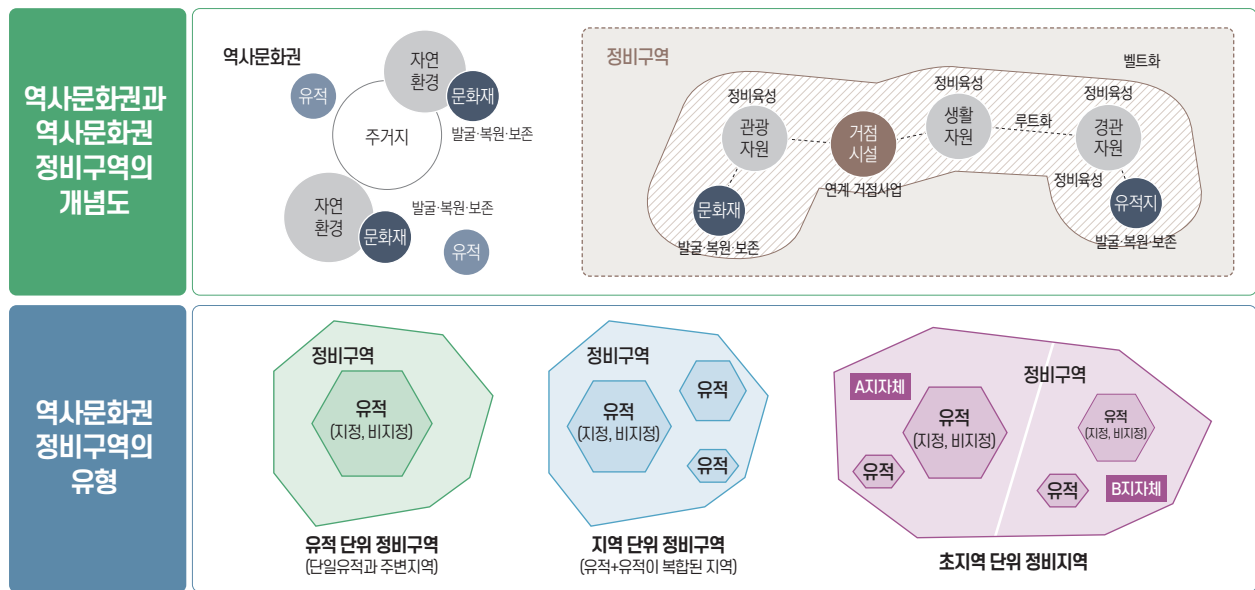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시도 경계를 넘어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설정유형의 예시 또는 전략계획 수립주체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추진주체(공동협의체, 거버넌스 등), 협력방식, 법적 근거 및 행·재정 지원 등 초광역적 연대·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협의,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정비시행계획의 검토(문화재청장 제출 전 단계) 및 실시계획 승인주체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전략계획 수립주체의 하나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여전히 그 역할과 기능이 모호
- 특별법 제2조의1에 정의된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위를 고려할 때, 초광역적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 또한 중요한 추진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가교이자 실제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 및 정비사업 계획 수립의 방향, 지침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간 정비구역 설정 및 정비사업 계획에 관여할 조정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의4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과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를 통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개념도와 정비구역 설정유형을 제시
- 다만 아직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유형으로 제시된 예시도 개략적인 것으로, 어떤 잣대로 정비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적당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몇 개 정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정비구역별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등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또는 원칙) 제공이 필요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기준의 필요성은 먼 또는 공간계획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정비제도 도입목적과도 연결됨. 즉 역사적 맥락과 도시구조를 고려한 통합적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유산 전반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정이 중요
- 정비구역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와 혜택의 균형(또는 조화)과 관련된 것임. 특별법 제16조에서는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17조 제6항과 제21조 제1항의 의제처리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의 위상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 및 관리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필요(심경미 외 2022)

4 역사문화권 단위에서는 가야역사문화권과 마한역사문화권 등이 관련 계획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부산, 전북, 전남, 경북에서 관련 계획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함안군, 나주시, 김해시, 고령군, 익산시, 해남군, 영안군, 연천군이 관련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임(건축공간연구원 2023).

〈그림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권정비구역 개념도와 정비구역의 유형 예시



자료: 문화재청 2022a; 2022c.

■ [정비사업] 사업유형의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의3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거의 모든 사업분야가 정비구역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사업 모두를 망라하여 제시
- 다만 법적 구속력⁵⁾이나 재원의 한계와 결부시키게 되면 실제 조사·연구사업과 문화유산 정비사업 보다는 공간환경 정비사업과 활용·육성사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타 부처 사업(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등)과의 차별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대응책이 필요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초광역적 또는 광역적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의 어려움이 결국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연계·협력사업 발굴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임. 법 제2조의1에 정의된 역사문화권별 공간범위를 고려할 때,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예: 역사문화권 연계·협력형 등)을 발굴할 필요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들의 특성상 문화재를 담당하는 단일 과에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지역의 역사성 및 시간성, 공간성과 공동체성, 미학성과 창의성 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어야 하므로,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함. 법 제2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역사문화권에 대한 지자체별 관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예산지원방안이나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5 법 제1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보호물 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과 그 보호구역보호물 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기타]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지원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이나 윤석열 정부의 문화유산 관련 국정기조를 고려하면, 비지정문화재가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비지정문화재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있음. 우선 비지정문화재가 분포한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매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곧 시·발굴조사를 위한 최적지 확보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여기에 정비사업 대상의 모호함이라든가 우선순위 부여의 어려움,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성과 도출의 한계 또한 비지정문화재 정비를 둘러싼 이슈들로 향후 검토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문화재와 주변지역에 관한 계획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과 주요 정비사업 등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 해당 지자체의 중요계획들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참고문헌

- 건축공간연구원. 2023.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착수보고 자료.
- 문화재청. 2022a.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가이드. 대전: 문화재청.
- _____. 2022b.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디자인 가이드(안) 부록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_____. 2022c.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
- _____. 2023a.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계획.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0199&no=26859&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2023년 7월 18일 검색).
- _____. 2023b.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 기반 구축 추진: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 기반 마련 위한 전수조사 2024년까지 실시 예정, 1월 27일. 보도자료. https://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890§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2023년 6월 29일 검색).
- 심경미, 김중범. 2022.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이해와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auri brief 246호.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 이순자. 2021. 국토균형발전과 중원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총서1: 융합의 공간, 중원중원역사문화의 정체성. 청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이순자, 차은혜. 2017.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장석홍. 2014. 한국사에서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한국학논총 41권: 1-13.
- 조홍석, 서현정, 황현진, 최지수, 조진한, 신연지, 백소현. 20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 대전: 문화재청.
- 채미옥, 차미숙, 문정호. 2012.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data.nsdi.go.kr> (2023년 6월 29일 검색).
- 국회. 의안정보센터.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년 6월 29일 검색).
-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main.do> (2023년 6월 29일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2023년 6월 29일 검색).

이 리포트는 "이순자 외. 2023.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발간예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